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1년 3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29일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2000.10.20) 개정 및 행정자치부 『2001년 공유재산관리지침(2001. 2. 16)』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무상 대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 현행 >

‘83. 7. 1 독립의료원에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 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만성적인 누적 적자로 인하여 설치조례(부칙 제8조, '83. 7. 1)에 출자 시 까지 무상 사용토록 조치

### 4. 심의사항

####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 위 치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부지내
- 토 지 : 사직동 554-6외 2필지 37,767m<sup>2</sup>
- 건 물 : 19동 17,497.3m<sup>2</sup>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출자 시까지
- 회계구분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지방공기업회계

#####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위 치 :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부지내
- 토 지 : 문화동 1654외 8필지 15,3837m<sup>2</sup>
- 건 물 : 8동 9,440.27m<sup>2</sup>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출자 시까지
- 회계구분 :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지방공기업회계

### 5.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가. 무상사용 재산총괄

<지방공사의료원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기 관 명	재 산 현 황			비 고
		건수	면적(m <sup>2</sup> )	금액	
계		39	80,089.57	24,928,933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충주의료원	22	55,266.30	18,563,489	
	토 지	3필지	37,769.00	10,453,988	
	건 물	19 동	17,497.30	8,109,501	
	충주의료원	17	24,823.27	6,365,444	
	토 지	9필지	15,383.00	3,395,391	
	건 물	8 동	9,440.27	2,970,053	

나. 무상사용 허가 재산의 목록 : 별첨과 같음

## 6. 검토의견

###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검토한 바

본 동의안은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무상 사용하면서 회계를 처리하는 사례와 무상 사용에 따른 수익사항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음.

기업의 독립채산원칙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2000. 10. 20)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 그동안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